

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3지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09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결정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49호(2023.12.14.)로 결정(변경)한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구 수송동 146-2번지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
2.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17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 요지

- 1) 정비사업의 명칭
 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- 사업의 명칭 : 수송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1-3지구(종로구청사)
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-2번지 일대
 - 면 적 : 8,622.3 m^2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종로구청장 외 1인(대표 정문헌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, 12층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년
- 5) 건축계획: 지하6층/지상16층, 연면적 83,985.78 m^2 , 공공업무시설 등

나. 공람 기간 : 2025. 1. 17. ~ 2025. 1. 31.(14일간)

다. 공람 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72)

라. 관계 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
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